



천주교 서울대교구

구로3동 성당

주보성인 : 프란치스코 살레시오

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.guro3cc.com

☎ 사무실 857-8541 팩스 857-8549

부속기관: 골별유치원 857-8545 / 요셉어린이집 857-8546

주 임 신 부	백 승 준	시 문	
보좌 신 부	이 정 은	요한보스코 (중·고등부/청년부)	
	장 승 필	안드레아 (유·초등부)	
전 교 수 녀	윤 옥 주	율리아 (원장)	
	송 도 다	도 다 (중·고등부/청년부)	
	이 민 자	미란다 (유·초등부)	
총 회 장	박 용 환	안토니오	010-3782-7563
연령회 회장	김 인 기	베드로	010-5311-7604

모임

단 체 명	일 시	장 소
제대헌화회	12월 2일(화) 11:00	6교실
자녀를 위한 기도	12월 5일(금) 19:40	1교실
성모성심회	12월 6일(토) 17:30	교육관
위령봉사회	12월 7일(일) 11:40	보스코홀
M.E	12월 7일(일) 11:50	6교실
구역장, 반장모임	12월 10일(수) 20:00	식당

대림특강일정

- 일시 : 월요일 저녁 19시 40분

일 자	제 목	강 사
12월 08일	교구사목교서 및 본당 사목설정방향 설명	주임신부님
12월 15일	거룩한 기억속에 현존하시는 예수그리스도	이정은신부님
12월 22일	마르첼리노의 기적	영화피정

판공성사 안내

- 대림시기 미사전후로 판공성사 있습니다.
- 집중판공성사 : 12월 18일 (목) 19:40

성탄제 안내

- 일시 : 12월 24일(수) 미사후
- 성가경연대회로 진행
- 성가지정곡 1개, 자유곡 1개
- 인원이 많을수록 가산점부과

우리들의 정성(11월 19일 ~ 11월 25일)

교 무 금		8,858,000원
주일헌금	현금	 4,806,900원
	하상업	 17,000원
감사헌금	김용진10만원 박정순20만원 김진수10만원 성모성심회30만원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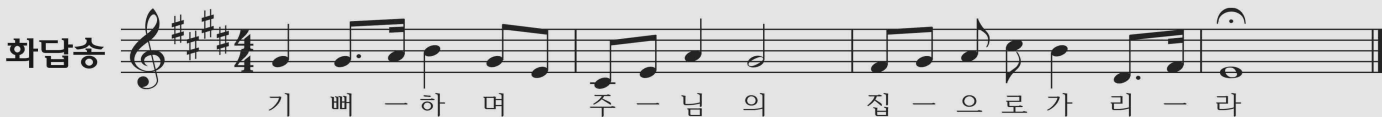
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

월 일	해 설	복 사	독 서		
11/30	신영옥	도현만	장희석	안상록	민옥경
12/7	박혜선	도현만	심재순	김덕영	손정주

성체 분배자 명단

월 일	토요주일	06:30	10:30	
11/30	장인홍	이화봉	박용환	김용진
12/7	조홍환	장인홍	박용환	도현만

성가번호 ♪ 입당 : 91 ♪ 예물준비 : 217, 340 ♪ 영성체 : 174, 498 ♪ 파견 : 96



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: 우리은행 129-05-001894 예금주 :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
(※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.)

제 2 편 전례와 성사

제 2 장 성 사

제 7 절 혼인성사

제 6 관 혼인의 해소

제 118 조 (바오로 특전)

1항 바오로 특전의 “질문”은 입교자의 세례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세례 전에 할 수도 있다. 또한 질문을 할 수 없거나 무익함이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확인되면 “질문”을 관면할 수 있다(교회법 제1144조; 교구사제 특별권한, 제18조 참조).

2항 바오로 특전을 사용하는 입교자는 가톨릭 신자와 혼인하여야 한다. 그러나 중대한 이유로 다시 미신자나 비가톨릭 영세자와 혼인하려는 경우에는 사제가 이를 관면할 수 있다(교회법 제1146.1147조; 교구사제 특별권한, 제19조 참조).

제 119 조 (배우자의 사망 추정)

전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심증이 있으면 사제는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전 배우자의 사망 추정을 선고할 수 있다. 그러나 사제는 먼저 국법에 따른 실종 선고나 부재자 선고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(교회법 제1707조; 교구사제 특별권한, 제20조 참조).

제 7 관 혼인의 무효 선고

제 120 조 (형식의 결여에 따른 무효 선고)

어떤 혼인이 교구 직권자의 관면 없이 가톨릭 혼인 예식을 거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실하면, 사제는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그 혼인이 무효임을 선고할 수 있다(교회법 제1108조; 교구사제 특별권한, 제21조 참조).

제 121 조 (형식의 결함에 따른 무효 선고)

어떤 혼인이 가톨릭 혼인 예식으로 거행되었으나, 교회법 제1108조의 규정대로 주례권이 없는 이가 주례하였거나 입회 증인이 없었거나 1명뿐이었을 때, 그 혼인의 무효에 대한 판결은 교회법원에 유보된다(교회법 제1686조; 교구사제 특별권한, 제22조 참조).